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68회 제1차 정례회

# 검토보고서

2024. 6. 13.(목)

순서	검토안건	제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## 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4. 5. 24.
- 회부일 : 2024. 5. 28. (의안번호 : 24-76 )

## 2. 제안이유

특별협의회 운영 시 의장 자격을 동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업무 부서장도 의장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특별협의회 의장 자격 변경(안 제1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)
  - 입법예고 : 2024. 2. 29. ~ 3. 20.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특별협의회 운영 시 의장 자격을 동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업무 부서장도 의장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동장으로”를 “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”로, 같은 항 후단 중 “동장”을 “동장 또는 관련 업무 부서장”으로, “동 민원”을 “민원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절차상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. 2. 29.부터 2024. 3. 20.까지를 입법예고기간으로 하여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제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24. 2. 29.자 구보에는 게재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재는 2024. 3. 5.에 게재하였음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2024년2월 29일 구보(2136호)]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작성일 2024.02.29   작성자 홍보미디어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b></p>		
<p>◎ <b>자치법규 입법예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024-288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289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290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297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299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305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315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배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320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323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324호: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</li> <li>- 제2024-326호: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u></li> </ul> <p>◎ <b>고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024-21호: 이현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</li> <li>- 제2024-22호: 연남동 244-16일원 LH청어형 가로주거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</li> </ul> <p>◎ <b>공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2024-331호: 동진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진 신청에 따른 공공광물공고</li> </ul>	<p>제목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</p>	<p>입법예고구분 공고(입법예고)</p>	<p>제재번호</p>
	<p>담당부서</p>	<p>자치행정과</p>	<p>담당자/연락처</p>
	<p>입법예고번호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386호</p>	<p>등록일 2024.03.05</p>
	<p>제재기간 2024-03-06 ~ 2024-03-26</p>		
	<p>1. 자치행정과-3911(2024.2.26)호와 관련됩니다.                  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</p> <p>가. 자치법규명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                 나. 입법예고기간: 2024. 2. 29. ~ 3. 20. (20일)                  다. 입법예고법규명: <b>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</b>                  라. 입법예고문: (붙임) 참조</p> <p>붙임 입법예고문(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). 끝.</p>		

- 입법예고 제도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상 법정절차로서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충분한 의견제시 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입법예고의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임.
-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입법이 무효가 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#### ○ 내용상 검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민원별 상생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을 보면, 아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등 기관 관련 갈등 조정 협의, 발전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해지 관련, LNG 발전소 대기 오염물질 배출 대책 미흡 관련,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 주차장 건립 관련,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논의 등을 포함하고 있음.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, 동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많다고 판단되므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원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의장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민원은 찬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주민들 간에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민원의 난이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위원으로 구성하여 민원 해결 과정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
## [별표 1] 관계 법령

###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**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[시행 2022.10.07](일부개정) 2022.09.15 조례 제1486호

**제7조(예고방법)**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시보·신문

• 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.